

2020년 제4회 건축 소위원회 서면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원당동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지구 C8-2-2 업무시설(오피스텔) 및 근생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서구청	심의일자	2020. 04. 28.
건축종별	[O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(주)○○디엠씨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지구		
	지 번	C8-2-2	관련지번
	대지면적	1,927 m ²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일반상업지역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,250.91 m ²	건폐율 64.91 % 층수 지하: 6층 / 지상: 12층
	주 용 도	업무시설(오피스텔) 근린생활시설	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 동수 1동
	최고높이	47.84 m	용적률 599.76 % 연면적 합계 20,618.08 m ²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
	(시 공)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암반층 천공시 C.I.P 밀림방지를 위한 적정 Auger 장비 선정 요함 ○ 기초 저면 차수를 위해 Post Pile 철골에 지수재 시공 요함 ○ 지상1층 보 하부 자재 및 장비 등 작업하중을 고려하여 Jack Support 시공 요함 	
(공 통)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전검토 의견의 조치계획 및 건축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, 착공신고 등) 시 반영할 것 		
심의결과	<input type="checkbox"/> 원안 의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조건부 의결 <input type="checkbox"/> 재검토 의결 <input type="checkbox"/>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